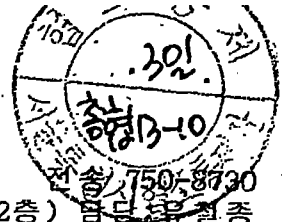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716/7

처리부서: 주택개량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 2층) 담당: 유철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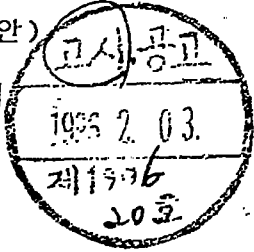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개 58531- 262

시행일자 1996. 2. 3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영 10
주택 국 장	전결	
주택개량과장	<i>[Signature]</i>	법무담당관 <i>[Signature]</i>
개량 2 개장	<i>[Signature]</i>	
기안	유철종	협조

제목 수유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·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234호('94.7.8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5호('95.11.11)로 구역변경된 수유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결정요청이 있어 내용검토한바,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추가 및 사업계획결정 요청한 사항으로서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(구역의지정) 및 도시계획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(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)의 규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고시)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며, 도시재개발법 제5조(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)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(권한의 위임)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결정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(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)의 규정에 따라 분임(고시안)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분임 : 1) 고시(안) 1부.
- 2)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 각1부.
- 3) 사업계획결정도서 1부.
- 4) 관계부서 협의공문 7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053

[Handwritten signature]

(제 2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지정·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

다. 법규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·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, 같은법시행령 제6조.

.붙임 : 고시문사본 2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주택관리과장

제목 :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지정·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234호('94.7.8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5호('95.11.11)로 구역변경된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·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.붙임 : 1) 고시(안) 1부.

2)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 각1부.

3) 사업계획결정도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4 안)

수신 : 강북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수유제2개발구역변경지정·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 통보

1. 귀구 주택 58531-2824호('95.12.27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대호로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요청한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구역변경지정·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 하였고 통보하니 관련 내용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부서에 알리어 도시계획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바라며

3. 특히 등 사업계획결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건축(2)위원회 자문결과 제시된 사항을 불임 공문사본과 같이 통보하니 반영하여 사업시행 및 건축심의신청 하기 바라며 공공임대 단지는 사업완료 후 별도의 단지관리를 위해 지적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관리소 및 관련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.

·불임 : 1) 고시문 사본 1부.

2) 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 각1부.

3) 사업계획결정도 및 관계부서 협의공문사본 각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지정·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 통보

1. 우리시 수유제2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하였고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·불임 : 1) 고시문 사본 1부.

2) 주택개량제개발구역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 각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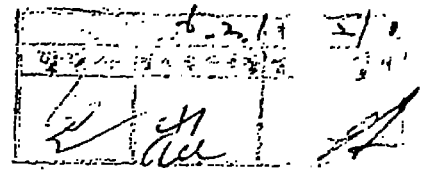
3) 사업계획결정도 1부. 끝.

주 택 개 량 과 장

·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.

원본에 2월 10일

고 시 (안)

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 20 호

수유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 · 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234호('94.7.8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5호('95.11.11)로 구역변경결정된 수유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·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·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및 지적승인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5조 ·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6년 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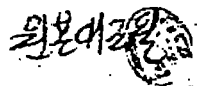
가. 구역변경결정조서

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당 초	변 경	
수유제2 주택개량 재개발	강북구 수유2동 260 번지일대	28,574	28,779	증 205 ㎡ (경미한구역변경)

나. 사업계획결정

- (1)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수유제2주택개량재개발사업
- (2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260 번지일대
- (3) 시 행 면 적 : 28,779 ㎡
- (4)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

056



○ 도로결정조서

구분	구 모				사용 형태	기능	연 장 (M)	기 점	증 점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폐지	소로	2	397	8	일반 도로	구획 도로	79	수유동 326-4	수유동 265-6	
폐지	소로	3	409	6	일반 도로	구획 도로	108	수유동 260-82	수유동 258-21	
폐지	소로	3	398	6	일반 도로	구획 도로	78	수유동 259-45	수유동 260-38	
폐지	소로	3	399	6	일반 도로	구획 도로	78	수유동 258-21	수유동 614-30	
폐지	소로	3	408	6	일반 도로	구획 도로	27	수유동 260-108	수유동 614-30	
신설	소로	3	1	6	일반 도로	국지 도로	146	수유동 265-8	수유동 259-45	
신설	총로	3	1	12	일반 도로	국지 도로	120	수유동 257-9	수유동 265-8	
신설	소로	1	2	1	일반 도로	국지 도로	17	수유동 605-211	수유동 605-211	
신설	소로	1	1	2	일반 도로	국지 도로	49	수유동 265-9	수유동 614-30	

(5) 공공공지 결정조서

(단위 : m²)

구 분	시설의 종류	시설의 구분	위 치	면 적	증 감	비 고
신 설	공공공지	공공공지(1)	수유동 260-86	141		
		공공공지(2)	수유동 260-78	208		
		공공공지(3)	수유동 260-27	12		
		공공공지(4)	수유동 259-28	7		

(6) 건축계획

구분	획지의 구분	위치	건폐율 %	용적율 %	건축물 높이	건축물의 주된 용도
건축시설	택지1	수유동 260-58 번지일대	24% 이하	265% 이하	18층 이하	공동주택(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	택지2	수유동 247-3 번지일대	22% 이하	265% 이하	18층 이하	공동주택(공공임대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	택지3	수유동 257-72 번지일대				동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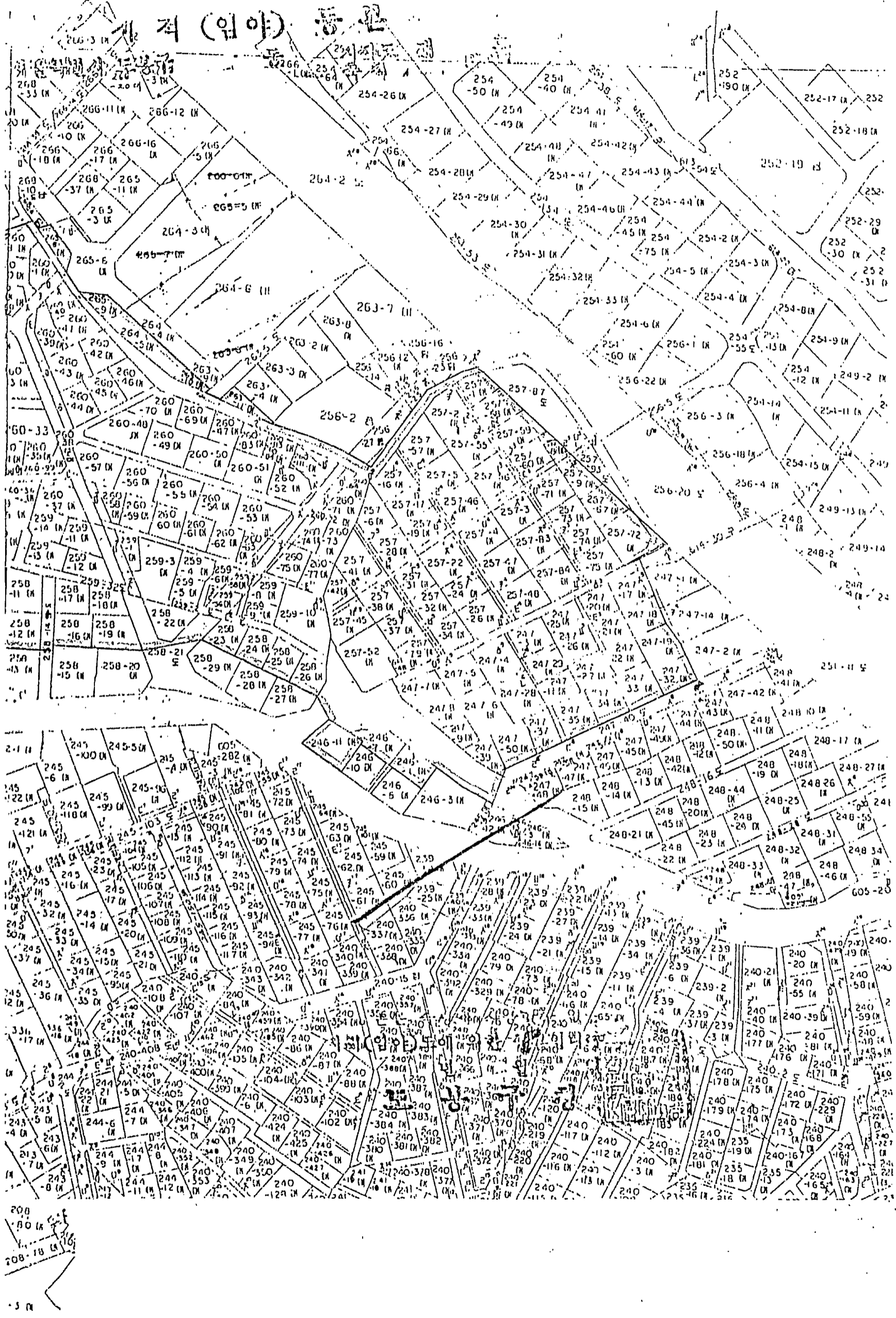
수유제2구역 사업계획결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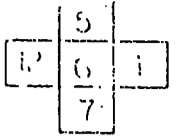
협의부서	회 신 내 용	처 리 의 건
도시경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파트 배치는 남북방향으로 개방감이 들도록 하고 층수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할 것. - 이면도로는 선형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단자내 차량 동선체계를 수립할 것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심의시 반영토록 구청에 통보
하수처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인가시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득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토록 구청에 통보
상수도사업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따로붙임 "급수협의 조건문"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토록 구청에 통보
도시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적정고도 유지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심의시 반영토록 구청에 통보
도로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견없음 	
시설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견없음 	
연료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따로붙임 "검토의견"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토록 구청에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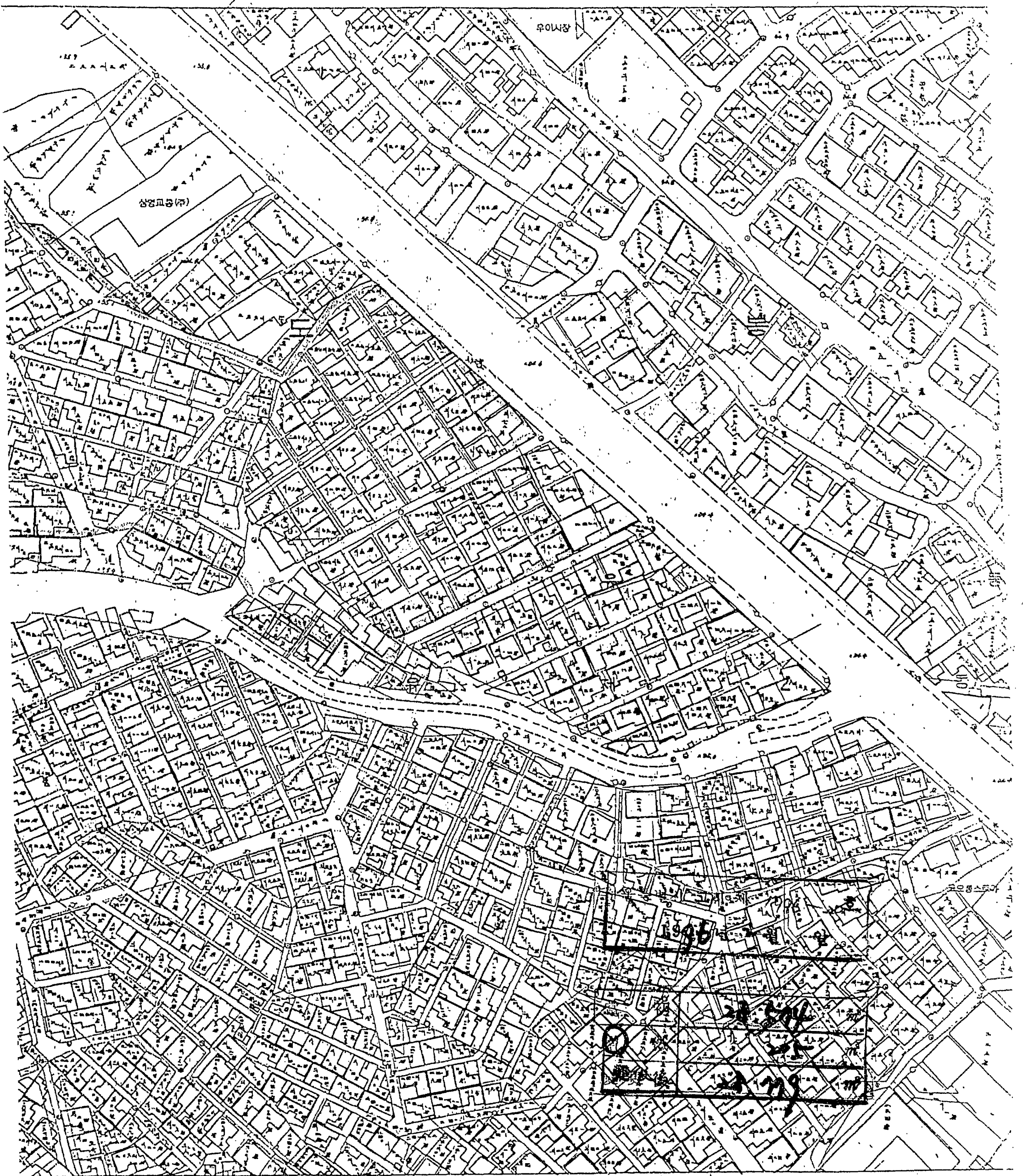
관공서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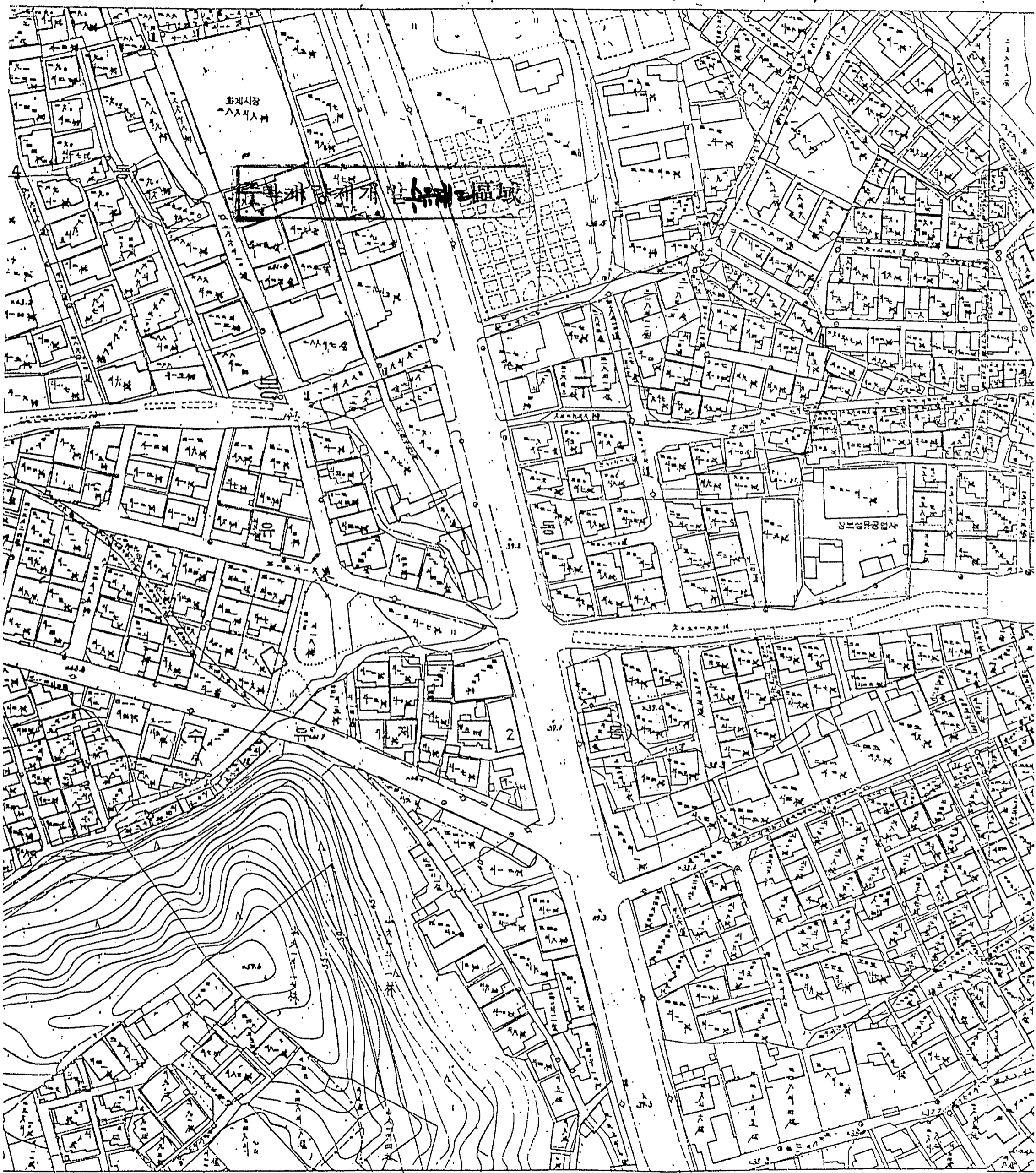
도봉구 수유동 지적도 25 장중 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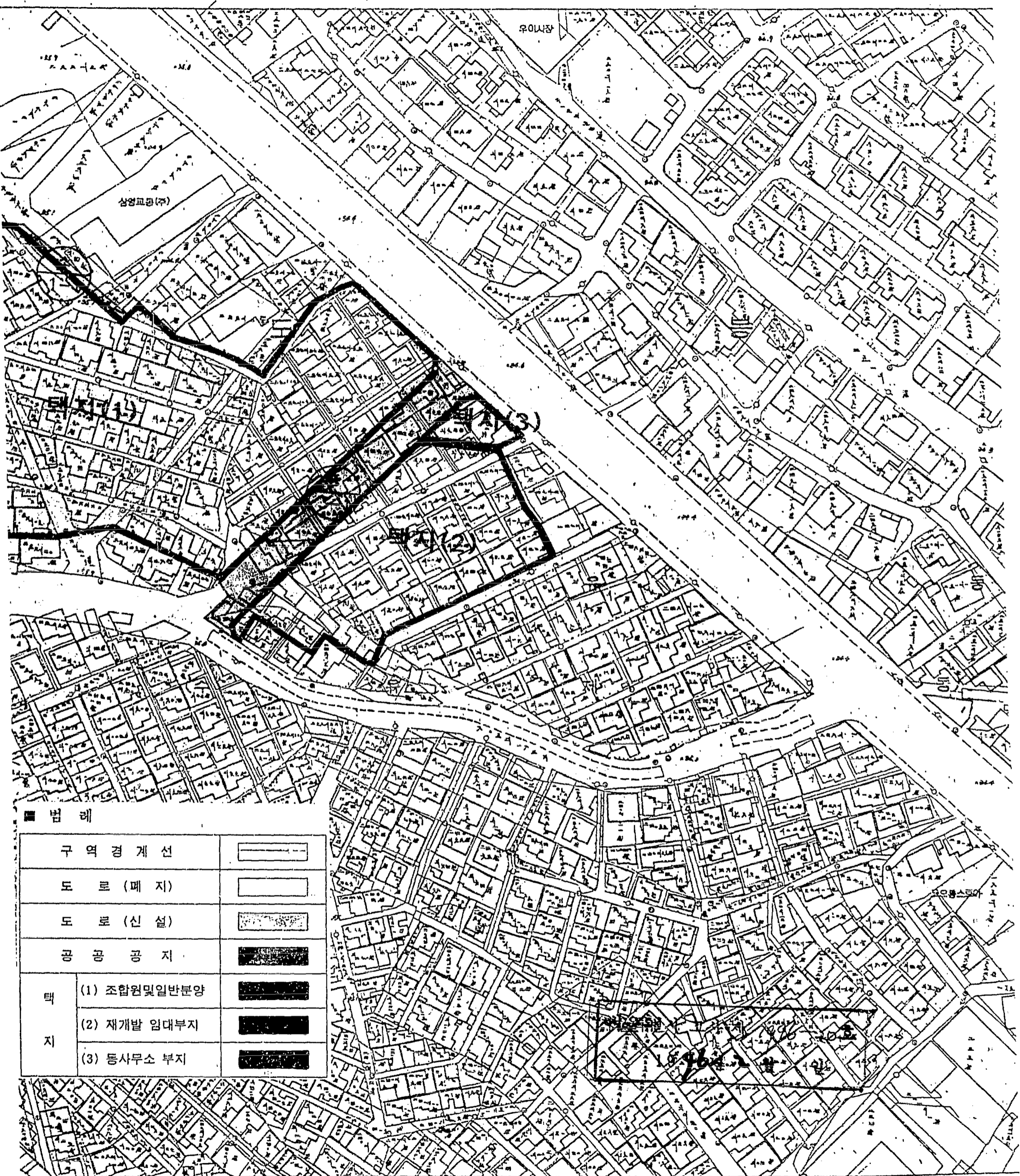
가척(임야) 동분











■ 범례

구역경계선		
도로(메지)		
도로(신설)		
공공공지		
택지	(1) 조합원및일반분양	
	(2) 재개발 임대부지	
	(3) 동사무소 부지	

